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
------	-----

2022. 9.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9.2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주용태)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필요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5) 소요예산 : 68,526,294천원(685억 2천 6백만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 2) 규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6층 건물)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와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문화재단 현황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되었음.
- 현재 3본부 9실 25팀 8단위조직에 228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 재단 본관을 포함한 1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 인력 현황 >

정원/ 현원	문화행정직									운영 지원직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
232/ 228	1/1	1/0	3/1	9/3	25/14	33/26	46/42	70/66	32/63	12/12

다. 출연의 규모와 필요성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의 문화예술착장 활성화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출연금 규모를 총 685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지난 해 533억 7천 6백만원 대비 28.4%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을 정립하고 약자와의 동행과 상생, 시민문화 기회 확대를 제공하기 위함임.

< 최근 5개년 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총예산	56,620,670	64,528,000	62,329,976	61,529,716	77,085,540
출연금	50,057,000	57,406,000	55,762,649	53,376,276	68,526,294
자주재원을	11.6%	11.0%	10.5%	13.3%	11.1%

* 기본재산사용, 전기이월액 및 수탁사업비 등 제외

- 증액된 사업비 편성안을 살펴보면,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발표된 ‘서울비전 2030’ 등 서울 문화정책사업을 수행하고, 문화본부의 ‘디지털문화감성도시 10대 과제’ 와 더불어 각종 공약사항이행과 시정방향과의 연계를 위하여 사업구조가 재편되었음.
- 특히 ‘약자와의 동행’ 이라는 시정방향에 따라 아동, 다문화, 장애인, 노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수 사업이 신규·증액 편성된 것이 두드러지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동북·동남권 예술교육센터가 개관될 예정임.

- 이같이 서울시민들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시정방향에 부합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공존할 문화예술분야의 제도적 기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1) 수입예산(안)

-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770억 8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5천 6백만원(25.3%) 증액되었고, 이 중 출연금은 685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 5천만원(28.4%)이 증액되었음.
- 증액의 주요원인은 출연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서울비전 2030 등 서울시 문화정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 수입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안)	2022년도	증감	증감율
총액	77,085,540	61,529,716	15,555,824	25.3%
자체수입	2,406,885	2,389,440	17,445	0.7%
서울시출연금	68,526,294	53,376,276	15,150,018	28.4%
순세계잉여금	6,152,361	5,764,000	388,361	6.7%

2) 지출예산(안)

-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액과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증액은 ▶ 예술창작지원(시각 외 기반지원) 48억원(228.0%) ▶ 예술지원 정책 개선 및 성과관리/확산 10억원(신규) ▶ 원로예술지원 10억원(신규) ▶ 대학로극장 퀴드 공연사업운영 8억 2천 3백만원(69.9%) ▶ 연극창작시설

29억 8천 4백만원(신규) ▶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 8억원(36.4%)
 ▶ 서울 스테이지11 6억원(신규) ▶ 한강 공연예술 축제 10억원(신규) ▶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5억 6천 4백만원(81.0%) ▶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11억 6천
 9백만원(신규) ▶ 동남권 예술교육센터 15억 5천 3백만원(신규) ▶ 인건비 13억
 1천 1백만원(11.6%) ▶ 퇴직급여 7억 4천 9백만원(49.8%) ▶ 예비비 12억
 9천 3백만원(347.2%) 등임.

- 감액은 ▶ 예술창작지원 39억 9천 1백만원(△49.3%) ▶ 청년예술청 1억 9천만원
 (△18.3%) ▶ 예술청 3억 1천만원(△17.1%) ▶ 대학로극장 쿼드 무대기술 운영
 및 관리 1억 7천 1백만원(△38.7%) ▶ 창작연습공간 5억원(△100.0%) ▶ 서울
 장애예술창작센터 2억 7천 5백만원(△32.0%) ▶ 생활문화 활성화 15억 3천
 6백만원(△100.0%) ▶ 생활밀착형 지역 소극장 활성화 2억 5천만원(△100.0%)
 ▶ 서울거리예술축제 4억원(△28.6%)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4억 1천
 1백만원(△17.8%) ▶ 서울시민예술대학 4억원(△100.0%) 등임.

<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 지출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증감율
총계	77,085,540	72,346,711	4,738,829	6.6%
사업비	52,042,466	40,610,000	11,432,466	28.2%
예술창작활성화	28,488,666	21,439,000	7,049,666	32.9%
예술기획 및 창작지원	16,616,800	12,632,000	3,984,800	31.5%
예술창작지원	4,100,000	8,091,000	△3,991,000	△49.3%
예술창작지원(시각 외 기반지원)	6,905,000	2,105,000	4,800,000	228.0%
예술지원정책 개선 및 성과관리/확산	1,000,000	-	1,000,000	-
청년예술지원	500,000	-	500,000	-
원로예술지원	1,000,000	-	1,000,000	-
융합예술플랫폼	879,000	479,000	400,000	83.5%
미래예술창작지원	400,000	200,000	200,000	100.0%
유망예술지원	500,000	250,000	250,000	100.0%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증감율
	문래예술공장	482,800	467,000	15,800	3.4%
	청년예술청	850,000	1,040,000	△190,000	△18.3%
	대학로기반 공간사업 운영	7,659,139	4,801,000	2,858,139	59.5%
	예술청	1,500,000	1,810,000	△310,000	△17.1%
	대학로극장 퀴드 무대기술 운영 및 관리	271,139	442,000	△170,861	△38.7%
	대학로극장 퀴드 공연사업운영	2,000,000	1,177,000	823,000	69.9%
	서울연극센터	904,000	872,000	32,000	3.7%
	창작연습공간	-	500,000	△500,000	△100.0%
	연극창작시설	2,984,000	-	2,984,000	-
	창작공간기반 사업운영	4,212,727	4,006,000	206,727	5.2%
	금천예술공장	629,513	540,000	89,513	16.6%
	신당창작아카데미드	557,600	609,000	△51,400	△8.4%
	서울무용센터	610,000	580,000	30,000	5.2%
	서교예술실험센터	670,000	650,000	20,000	3.1%
	연희문학창작촌	543,614	457,000	86,614	19.0%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585,000	860,000	△275,000	△32.0%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500,000	310,000	190,000	61.3%
	문학의 집	117,000	-	117,000	-
	문화진흥 활성화	15,713,100	12,538,000	3,175,100	25.3%
	문화향유 활성화	3,600,000	3,986,000	△386,000	△9.7%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	3,000,000	2,200,000	800,000	36.4%
	생활문화 활성화	-	1,536,000	△1,536,000	△100.0%
	생활밀착형 지역 소극장 활성화	-	250,000	△250,000	△100.0%
	서울 스테이지11	600,000	-	600,000	-
	예술축제 지원 및 활성화	4,600,000	4,211,000	389,000	9.2%
	서울거리예술축제	1,000,000	1,400,000	△400,000	△28.6%
	서울 비보이 문화콘텐츠 육성	700,000	500,000	200,000	40.0%
	한강 공연예술 축제	1,000,000	-	1,000,000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1,900,000	2,311,000	△411,000	△17.8%
	서울형 예술교육 확산	7,513,100	4,341,000	3,172,100	73.1%
	교육예술가(Teaching Artist) 운영	1,666,000	1,666,000	-	0.0%
	서울예술교육 인력콘텐츠 통합 개발 및 확산	350,000	-	350,000	-
	서울시민예술대학	-	400,000	△400,000	△100.0%
	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	1,515,000	1,579,000	△64,000	△4.1%
	서서울예술교육센터	1,260,100	696,000	564,100	81.0%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1,169,000	-	1,169,000	-
	동남권 예술교육센터	1,553,000	-	1,553,000	-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증감율
정책협력 및 관리	1,905,500	1,372,000	533,500	38.9%
대외협력 및 홍보 활성화	1,905,500	1,372,000	533,500	38.9%
문화정책개발 및 지원	320,000	260,000	60,000	23.1%
서울메세나사업	505,000	435,000	70,000	16.1%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	250,000	-	250,000	-
네트워킹홍보강화	418,500	465,000	△46,500	△10.0%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	212,000	212,000	-	0.0%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200,000	-	200,000	-
문화시설 및 시스템 운영	5,935,200	5,261,000	674,200	12.8%
문화시설 이용활성화 및 시스템 관리	5,935,200	5,261,000	674,200	12.8%
본관 시설운영 및 관리	1,762,000	1,291,000	471,000	36.5%
대학로 시설운영 및 관리	2,749,200	2,388,000	361,200	15.1%
정보시스템 운영	405,000	450,000	△45,000	△10.0%
온라인서비스 통합 유지보수 및 고도화	1,019,000	1,132,000	△113,000	△10.0%
일반관리비	21,749,530	18,719,244	3,030,286	16.2%
인건비	14,268,807	12,528,447	1,740,360	13.9%
인건비	12,614,781	11,304,027	1,310,754	11.6%
직무수행경비	20,000	20,000	-	0.0%
평가급	1,634,026	1,204,420	429,606	35.7%
운영경비	7,480,723	6,190,797	1,289,926	20.8%
일반운영비	2,037,696	2,028,232	9,464	0.5%
업무추진비	149,800	115,400	34,400	29.8%
직무수행경비	12,000	12,000	-	0.0%
여비	367,784	194,040	173,744	89.5%
행사홍보비	22,178	21,638	540	2.5%
교육훈련비	200,000	139,000	61,000	43.9%
일반보상금	1,500	1,500	-	0.0%
포상금	37,000	37,000	-	0.0%
관서업무비	79,592	73,100	6,492	8.9%
복리후생비	2,318,417	2,063,387	255,030	12.4%
퇴직급여	2,254,756	1,505,500	749,256	49.8%
예비비	1,665,544	372,472	1,293,072	347.2%

(1) 주요 신규사업

-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신규사업은 총 12건으로 분야별 지원 사업 중심에서 세대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연내 완공될 공간에 대한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음.

<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 지출예산 중 신규사업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증감율
예술지원정책 개선 및 성과관리/확산	1,000,000	-	1,000,000	-
청년예술지원	500,000	-	500,000	-
원로예술지원	1,000,000	-	1,000,000	-
연극창작시설	2,984,000	-	2,984,000	-
문학의 집	117,000	-	117,000	-
서울 스테이지11	600,000	-	600,000	-
한강 공연예술 축제	1,000,000	-	1,000,000	-
서울예술교육 인력·콘텐츠 통합 개발 및 확산	350,000	-	350,000	-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1,169,000	-	1,169,000	-
동남권 예술교육센터	1,553,000	-	1,553,000	-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	250,000	-	250,000	-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200,000	-	200,000	-

- ‘예술지원정책 개선 및 성과관리/확산’ 은 시정방향 중 ‘글로벌 경쟁력 강화’ 와 연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예술지원제도 개선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6억 4천만원, 예술창작활동 사상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원로예술지원’ 은 시정방향 중 ‘약자와의 동행’ 과 연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활동경력 25년 이상 서울시 거주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준비와 프로젝트 수행, 아카이브 비용 등 공모를 통해 1천만원씩 90명을 지원할 예정임.
- ‘연극창작시설’ 은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성북연극창작시설 운영비 반영을 위하여 29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주변 소재로 2020년 3월 공사를 시작한 성북 연극창작시설은 당초 2022년 중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지역민원 등을 이유로 1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 ‘서울 스테이지11’ 은 2022년 하반기 예비비로 신규 편성하였던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고자 6억원이 증액되었음.
- 재단이 운영 중인 공간을 거점으로 기획공연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2022년 하반기 사업비 3억 7천만원에서 2023년 연중 사업비 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한강 공연예술 축제’ 는 2022년 서울시장 공약사항인 ‘노들섬 예술 프로젝트 추진’ 의 일환으로 오페라, 발레 등의 야외 공연을 진행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와 ‘동남권 예술교육센터’ 는 각각 2023년 8월과 10월에 개관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운영비 또한 각각 11억 6천 9백만원, 15억 5천 3백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2) 주요 증액사업

-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증액사업은 총 18건으로 시정방향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약자와의 동행’ 과 연계하고 공약사항, 정책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증액되었으며, 이 중 5억원 이상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 지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증감율
예술창작지원(시각 외 기반지원)	6,905,000	2,105,000	4,800,000	228.0%
대학로극장 퀴드 공연사업운영	2,000,000	1,177,000	823,000	69.9%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	3,000,000	2,200,000	800,000	36.4%
서서울예술교육센터	1,260,100	696,000	564,100	81.0%
인건비	12,614,781	11,304,027	1,310,754	11.6%
퇴직급여	2,254,756	1,505,500	749,256	49.8%
예비비	1,665,544	372,472	1,293,072	347.2%

※ 5억원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임.

- ‘예술창작지원(시각 외 기반지원)’ 은 기존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 총 7개 분야 중 시각, 다원, 문학분야를 분리하고,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48억원이 증액되었음.
 - 지원금 지급 외에 창작연습공간 5억원, 창작예술공간지원 5억원 등의 사업과 통합되면서 증액분이 확대되었음.
- ‘대학로극장 퀴드 공연사업운영’ 은 지난 7월 개관한 퀴드 극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8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2년 하반기 6개월분 운영비가 2023년 연간 운영비로 확대되었으며, 제작공연 건수 또한 3건에서 6건으로 확대되었음.
-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은 기존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통합하고 자치구 재단 협력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하기 위하여 8억원이 증액되었음.
- 광역-자치구 문화재단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을 추진하여 자치구 복지관, 장애인문화 예술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민 참여형 축제를 개최할 계획임.
-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시정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5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서남 생활권의 취약계층과 다문화계층을 대상으로 방학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공연·체험 등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예술로 아트MOM’ 운영에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미화영선을 위한 용역비의 인상분과 고정비용 인상분을 반영하여 8천 4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인건비’는 정원이 6명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수당을 반영하기 위하여 13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재단은 대학로 청사와 공공극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이사회 의결로 정규직 6명의 정원을 증원하였고, 2022년 7월 채용을 완료하였음.
- 증원 내역은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대학로 청사의 시설, 전기, 소방시설 등의 운영과 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 3명, 공공극장의 운영과 무대기술 안전을 위하여 무대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 3명이 증원된 것임.
- ‘퇴직급여’는 과거 편성한 적이 없었던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하기 위하여 7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전까지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충당금만 편성해 오면서 임금 상승분에 따라 소폭 증가하여 왔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2명분의 명예퇴직수당 6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만 연중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예비비’는 2023년 중 시설 4개소(동북·동남권 예술교육센터, 연극창작 시설, 문학의 집)를 추가 운영하기 위하여 41명의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12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3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41명의 인건비를 인력증원 봉급예비비로 편성한 것임.
- 각 시설별 인력은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10명, 동남권 예술교육센터 11명, 연극창작시설 16명, 문학의 집 4명(3급 1명, 4급 3명, 5급 8명, 6급 11명, 7급 18명)이 배치될 예정임.

(3) 주요 감액사업

-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의 감액사업은 총 16건으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2022년 중 일부 공간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이 중 1억원 이상 감액된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 지출예산 중 주요 감액사업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증감율
예술창작지원(공연예술)	4,100,000	8,091,000	△3,991,000	△49.3%
청년예술청	850,000	1,040,000	△190,000	△18.3%
예술청	1,500,000	1,810,000	△310,000	△17.1%
대학로극장 퀴드 무대기술 운영 및 관리	271,139	442,000	△170,861	△38.7%
창작연습공간	-	500,000	△500,000	△100.0%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585,000	860,000	△275,000	△32.0%
생활문화 활성화	-	1,536,000	△1,536,000	△100.0%
생활밀착형 지역 소극장 활성화	-	250,000	△250,000	△100.0%
서울거리예술축제	1,000,000	1,400,000	△400,000	△28.6%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1,900,000	2,311,000	△411,000	△17.8%
서울시민예술대학	-	400,000	△400,000	△100.0%

※ 1억원 이상 감액된 세부사업임.

- ‘예술창작지원(공연예술)’은 각 분야별 공모를 통해 제작비와 창작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총 7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중 시각·다원·문학 3개 분야가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 ‘예술창작지원(시각 외 기반지원)’으로 편성되면서 39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다만 분리된 2개 사업을 합한 예산액은 오히려 8억 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므로 실제로는 증액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2023년도 ‘예술창작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안)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증감율
계	11,005,000	10,196,000	809,000	7.9%
예술창작지원(공연예술)	4,100,000	8,091,000	△3,991,000	△49.3%
예술창작지원(시각 외 기반지원)	6,905,000	2,105,000	4,800,000	228.0%

- ‘청년예술청’은 2022년에 편성되었던 거버넌스형태의 다수 사업이 통폐합되면서 1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2년도에는 거버넌스형태 사업으로 공동운영단, 서울청년예술인 회의, 청년기획자플랫폼, 성평등탈위계, 뉴미디어매체확장, 미디어 영상 작품구매 등(5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는 뉴미디어매체확장, 커뮤니티형 통합사업 등(3억 5천 2백만원) 2개 사업으로 통폐합되었음.
- ‘예술청’은 공동운영단 활동비, 시설비 및 부대비용 등의 예산이 축소되면서 3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공동운영단은 2021년 예술청 개관에 앞서 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11명의 민간위원(공동예술청장 2명, 운영위원 9명)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위임계약을 맺었음.
- 따라서 2022년도 공동운영단 민간위원의 연간활동비는 2023년도 4개월분 활동비만 편성되면서 1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술청 운영비 내 편성되었던 시설비와 부대비는 재단 시설안전팀에 이관되면서 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음.
- 이외에도 인건비, 연구개발비, 행사홍보비, 자산취득비 등이 조정되면서 기타 감액이 이루어졌음.
- ‘대학로극장 퀴드 무대기술 운영 및 관리’는 지난 7월 개관한 블랙박스형 극장 퀴드 조성사업이 종료되면서 1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이전비용을 위해 편성되었던 사업이 종료되면서 2억 7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구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위치했던 잠실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학로 주변으로 이전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 10월 중 재개관할 예정임.
- ‘서울거리예술축제’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일부 통합연계함으로써 각각 4억원, 4억 1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2개 사업의 통합으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기능이었던 서커스 배급 사업, 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시민 대상 교육사업 등이 축소되었고, 특히 센터 내 축제사업이었던 서커스 페스티벌이 ‘서울거리예술축제’와 통합되면서 각각의 행사홍보비가 감액되었음.
- 감액된 세부사업 중 ▶창작연습공간(△5억원) ▶생활문화 활성화(△15억 3천 6백만원) ▶생활밀착형 지역 소극장 활성화(△2억 5천만원) ▶서울 시민예술대학(△4억원) 등 4개 사업은 타사업과 통합되면서 각각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81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필요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소요예산 : 68,526,294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 2) 규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6층 건물)
-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이광훈 (☎ 2133-2555)